

지적재산권과 산업표준화 및 반독점법 관계 연구

지적재산권연구센터 제2호
(소장 정 병호)

1. 서론

목 차

1. 서론
2. 지적재산권과 기술표준화 및 독점규제법
3. 지적재산권과 표준화의 관계
4. 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과의 관계
5. 표준화와 독점규제법과의 관계
6. 결론

기술 표준화는 생산자 쪽에서 보면 제조 및 개발 비용의 절감을 사용자 쪽에서 보면 구입비용 및 시간의 절감을 가져오고 기업에 대해서 해당 기술 개발과 투자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효율성이 낮은 기술이 시장을 지배할 경우엔 열등한 기술로의 고착이나 기술혁신을 억제하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업 전 분야에 걸친 기술 개발의 속도와 발전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각 기업들은 기술 및 제품 경쟁에서 타사보다 앞서기 위해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기술 표준화 작업을 함께 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각 기업들은 자사가 개발한 기술을 표준화시키거나 표준을 만족시키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경쟁 기업보다 먼저 시장을先占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그 기술을 배타적으로 소유해 시장에서 독점적 우위를 누리려는 지적재산권 전략이 함께 하는 추세이다. 최근 지적재산권 분야의 독점적 공급자로서 절대우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술에 대한 특허 등의 획득을 통해서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이익의 극대화가 꾀해지고 있다.

그러나, 표준화된 기술이 가진 지적재산권의 행사가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시장 경제질서를 해칠 경우에는 독점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충돌은 지적재산권은 일방의 독점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독점규제법은 이를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독점규제법은 지적재산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관한 일반법인데 반하여 지적재산권은 특히 지적재산의 이용에 있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관한 특별법으로 양자는 지적재산과 제품을 둘러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보하는 점에서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처럼 기술의 표준화에 대한 개념과 표준화 기구들의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으로 기술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사이의 관계, 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의 관계를 도출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기술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및 독점규제법에 대한 개별적 내용을 각각 알아보고 난 뒤 각각 상호관계를 검토해보는 식으로 전개할 것이다.

2 지적재산권과 기술표준화 및 독점규제법

1)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이란 일반적으로 人間의 知的活動의 成果로 얻어진 精神的 產物로서 財產의 價值가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지적재산은 첫째, 예술·문학·음악 등을 중심으로 한 정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과 둘째, 새로운 발명고안 등과 같이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를 다시 세분화하여 둘로 나누면 첫째는 직접적으로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발명·고안·의장 등의 것과 둘째는 산업의 질서유지를 위한 식별

표지에 의한 것, 즉 등록상표, 서비스마크, 부정경쟁방지법, 상호에 관한 상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물질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권리를 산업체재산권, 정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한다. 그 외에도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종자산업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생명공학, 타이프페이스, 캐릭터,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하여 지적재산권이라 한다.

2) 표준화

표준화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표준(standard) 및 표준화(standardization)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표준은 기술의 물리적 특성이나 적용 시에 나타나는 외연으로, 축적된 기술적 경험을 성문화한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하는데, 이는 표준의 특성을 적절히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표준은 반복적이며 연속적인 적용을 위하여 승인되었으며 그 준수가 의무적이 아닌 기술명세(technical specification)로 정의되며, 표준화란 표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구현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하는데 이르는 일련의 力動的 과정(표준제정, 구현, 시험, 활용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는 그 목적을 어떤 상품의 형태, 치수, 소재, 기능, 안전성 등과 같은 기술적 특성을 규정함으로써 동 상품의 생산 및 유통에 대한 효율을 제고하고 제품, 공정, 서비스의 개선과 무역장벽의 장벽, 기술협력의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가. 표준의 분류

표준은 내용, 영역, 표준제정 주체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중 표준제정 주체에 의한 분류로는 국가 또는 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하는 공적표준(de



ture standard)과 VCR의 VHS 방식이나 컴퓨터 운영체제의 하나인 MS-DOS와 같이 시장원리에 의해 '사후적으로' 형성된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 혹은 시장주도표준이 있다.

표준을 연구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표준의 영역에 관한 것이다.

표준의 영역에 따라 표준을 분류하는 것은 역사도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되는 개념으로 5단계(사내표준, 단체표준, 국가표준, 지역표준, 국제표준)로 나누어진다.

나. 표준의 효과

표준의 효과 중 가장 큰 효과는 호환성(compatibility)이 가져오는 네트워크 외부경제효과라고 할 수 있다. 표준으로 인해 제품의 호환성이 이루어지면 제품에서 오는 효용은 그 제품이 속해 있는 다른 사용자의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된다. 또 표준은 생산공정의 혁신을 통한 규모의 경제(scope of economy / economy of scale)를 가능케 하고 판매경쟁을 가속화시키며 신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매출증대를 가능케 한다. 또한 표준의 긍정적 효과로 중복투자 방지와 불확실성의 감소 그리고 비용절감 효과를 들 수 있다. 표준은 기술자들간의 대화를 가능케 하는 기술적 언어로서 기술개발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표준은 정보경제학적으로는 정보체계(bundles of information)로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 및 생산과정에 대한 다양성을 제거함으로써 정보를 일률적으로 제공하여 거래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구매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표준은 정보제공을 통하여 시장에서 거래행위에 부수되는 탐색비용(search cost)과 측정비용(measure-

ment cost)을 감소시킬 수 있다.

표준화 때문에 초래되는 손실은 우선 제품의 다양성이 감소되고, 기술혁신을 둔화시켜 새로운 표준으로의 진보를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표준은 또한 기술적으로 열등한 기업들이 우수한 제품을 패배시킴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편익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일단 표준이 형성되면 소비자는 호환성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非호환적인 신기술 제품을 꺼림으로써 전반적으로 열등한 기술의 표준이 산업을 지배케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이를 열등한 표준으로의 고착(trap or lock in)이라고 말하며, 낡고 열등한 표준에 고착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비능률을 초래할 수 있다.

3) 독점규제법

가. 의의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나타나는 독과점 현상은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오고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오지만 다른 한편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을 마비시키고,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며 기업체질을 약화시키며, 분배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등 부정적 효과를 더 많이 가져왔다. 이러한 독과점의 폐단을 막기 위하여 나타난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이다. 따라서, 독점규제법은 "자본주의의 고도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촉진하기 위한"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독점규제법의 적용범위 및 예외

독점규제법은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쟁제 한행위만을 규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은 동법 또는 시행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에 한한다. 그 이외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사업인 경우에도 독점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중에서 지적재산권 행사행위에 대한 적용의 예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점규제법 제59조는 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저작권법·의장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3. 지적재산권과 표준화의 관계

1) 지적재산권과 표준화의 갈등 관계

표준화와 지적재산권 보호는 그 개념과 특성상 갈등관계에 있다. 기본적으로 표준화는 기술의 公有를 도모하는 반면, 지적재산권 보호는 기술의 私有를 도모한다.

즉 표준화는 혁신 기술의 사회적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보급·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공개성과 투명성, 이의 제기 보장 등을 중시하고 있다. 한편, 지적재산권은 첨단기술을 사유재산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원천이 되는 창조적 발명과 혁신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이다. 따라서 표준화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술확산을 위한 원심력이라면, 지적재산권은 기술혁신을 위한 구심력이 된다 할 수 있다.

2) 강제실시권

우리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특허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1호는 「특허발명의 실시가 계속하여 3년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을 때」, 특허발명이 그 특허출원일 전 타인

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혹은 등록의장 혹은 이와 유사한 의장을 이용하는 것일 때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허발명이 실시되지 않고 있을 경우, 이용발명의 경우에 강제 실시권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용발명의 경우는 반경쟁적이라고 판단된 관행의 是正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4호)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 실시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이외의 이유로는 강제실시권의 설정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표준화의 대상이 된 발명에 대해서는 상업상 실시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표준화의 대상이 된 기술과 관련된 특허에 관한 강제실시권 설정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이거나, 이용발명의 경우로 강제실시권의 무역관련 설정이 반경쟁적이라고 판단된 관행의 시정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강제실시권의 설정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WTO/TRIPs 협정 제31조의 취지에서 단지 공익적이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전쟁, 기타 국가긴급사태, 그 외에 극도의 긴급사태의 경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표준화된 기술을 이용할 경우에는 특허의 강제실시권 설정이 필요한 경우일지라도 다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WTO/TRIPs 협정 제31조는 체결국이 강제실시권 설정을 인정할 경우에 가해지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체결국은 이와 같은 강제실시권 설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자유이다. 설령 표준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실시권 설정이 제31조로 인정된다 해도 그것은 체결국에 그러한 강제실시권의 설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아니다.

3) 표준화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정책



가. 표준화 기구의 지적재산권정책 주요 요소

- ① 지적재산권 이해관계의 공개 : '조기' 공개의 권장
- ② 실시허여조건
 - ②-1 무료(free of charge)
 - ②-2 합리적 조건 및 차별적 토대 (reasonable terms and non-discriminatory basis)
 - ②-3 실시허여의 거절 (refusal to grant license)
- ③ 고지 : 공표된 표준촉에 포함된 실시허여 요건의 고지
- ④ 기록 : 표준개발기관이 소지한 공개 기록
- ⑤ 실시허여의 거절사례
 - ⑤-1 대체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표준의 개정
 - ⑤-2 표준의 철회
- ⑥ 권리부인자(disclaimer) : 표준개발기관의 지적재산권 요청 거절불능

나. 지적재산권과 표준화의 조화

표준화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지적재산권의 조기공개를 독려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이를 위한 표준화 조건이다. 조기공개는 표준화를 통한 네트워크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그리하여 각 표준기구에서도 조기공개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표준이 원활하게 제정·실시되기 위해서는 관련 지적재산권의 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간은 분쟁발생시 표준화 기구들은 전혀 관여치 않고 법원의 문제로만 돌리려 했으나 이런 경우 많은 시간·경비가 부담됨으로 조정·중재를 촉진할 수 있는 창구의 마련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4. 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과의 관계

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은 일방은 독점을 보호

하고 타방은 독점의 배제를 목적으로 하므로 기본적으로 모순 대립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파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 논거로 첫째, 특정의 지적재산독점과 시장독점은 서로 같지 않다. 둘째, 지적재산권은 지적재산에 대한 일정의 독점적 이용을 보호하는 것에 의해 지적재산의 창출과 이용(타인에게 라이센싱하는 것을 포함)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 새로운 지적재산과 제품, 새로운 경쟁자를 창출하는 경쟁촉진효과를 갖고 있어 경쟁촉진을 지향하는 독점규제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셋째, 지적재산권법은 지적재산의 타인에 의한 부당한 모방·무임승차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서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독점규제법과 이점에서 목적을 같아 한다.

이렇게 본다면 독점규제법은 지적재산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관한 「일반법」임에 비하여 지적재산권법은 특히 지적재산의 이용에 있어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관한 「특별법」이고 양법은 지적재산과 제품을 둘러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보하는 점에 있어서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5. 표준화와 독점규제법과의 관계

표준화가 독점규제법에서 문제가 되는 유형으로는 ①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센스를 행하는 경우, ② 표준화 과정(프로세스)을 악용하는 경우, ③특허풀(patent pool), ④사실상의 표준을 이용하여 끼워팔기, ⑤ 특허를 이용한 표준화 방해, ⑥ 기술표준을 이용한 競合者排斥行爲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최근에, 실제로 표준 제정과정에서 경쟁업체들을 오도시킨 것으로 인하여 최초로

미국의 반독점법이 적용되어 미연방무역위원회(FTC : Federal Trade Commission)의 제재를 받은 사건이 있는데 바로 Dell 사건이다.

기업에서 일단 기술을 개발하면 이러한 기술을 두고 빠르고 정확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즉, 개발한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하여 철저한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폐쇄 지적재산권(closed IPR)으로 사실상의 표준이 누릴 수 있는 고가의 전략을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처럼 역공학(reverse engineering)과 재공학(re-engineering)이 발달하여 급속도로 변해 가는 기술경쟁 시대에 있어서는 폐쇄 지적재산권으로서가 아니라 개방 지적재산권(open IPR)으로서 표준개발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표준으로 제정되면 박리다매를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

6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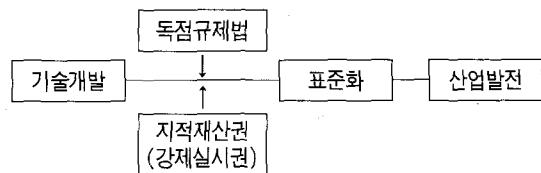
표준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필수적 지적재산권이다. 물론 필수적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는 또 다른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무상 허여 혹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실시허여를 거절한 기술에 대한 대체적인 기술이 없는 경우, 표준제정 준비과정에서 든 막대한 비용에 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이는 곧 국가적 손해뿐만 아니라 세계적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강제실시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

한편, 국가별로 강제실시권 제도의 구비 여부도 다를 뿐더러 이에 대한 국제적 조화를 추구한 WTO/TRIPs 협정에서도 표준의 설정을 목적으로 체결국이 강제실시권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님을 함축하고 있으며, 또한 명백한 그 제도적 취지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용된 바가 없는 제도이고 선진외국에서도 이용도가 낮은 제도라는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다.

하지만, WTO/TRIPs 협정 제31조의 취지와 우리나라 특허법의 강제실시권 제도의 취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표준화 대상이 된 기술과 관련된 특허에 관한 강제실시권 설정이 반경쟁적이라고 판단된 행위를 시정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바로 이 시점(반경쟁적에 대한 판단 시점)에서 독점규제법이 작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특허에 대한 강제허여는 국제조약상 불가능하나, 대신 독점규제법의 적절한 운용으로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산업표준화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및 독점규제법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

〈표준화 과정에서의 지적재산권 및 독점규제법의 관계〉



즉, 산업(기술) 표준화에 있어서 지적재산권과 독점규제법 사이에는 표준화된 기술에 대한 독점 인정과 독점의 배제라는 서로 대립하는 속성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균형적인 산업 발전이라는 동일한 목적 하에서 이들 양자는 오히려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기술이 시장 내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적용에 있어서 서로 조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